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5. 27 선고 2020가합956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롬 담당변호사 김재호

피 고 법무법인 D

변 론 종 결 2021. 4. 22.

판 결 선 고 2021. 5. 27.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주식회사 E 사이에 체결된 2019. 10. 10.자 별지 목록 기재 각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제3채무자들에게1) 별지 목록 기재 각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건설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하남시 F 공동주택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시행업을 맡아 진행하였고, 피고는 2017. 8.경부터 E 및 그 대표였던 G의 소송사무위임에 따라 E 및 G 개인을 당사자로 한 소송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들의 피보전채권

1) 원고 A는 2017. 3. 23. E와 G에게 변제기를 2017. 9. 30.로 하여 4억 원을 빌려주었고, 같은 날 원고 A, E, G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공증인 H 사무소 증서 2017년 제234호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2) 주식회사 I은 2017. 3. 23. E와 G에게 변제기를 2017. 9. 30.로 하여 18억 2,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같은 날 위 회사, E, G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공증인 H 사무소 증서 2017년 제229호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는데, 위 회사는 2017. 6. 29. 원고 B에게 E와 G에 대한 대여금 채권 중 1/4에 해당하는 455,000,000원 상당의 채권을 양도한 후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그 무렵 위 통지가 E와 G에 도달하였다.

3) 원고 C은 2017. 4. 30. E와 외부회계 감사계약을 체결한 후 E에 대한 회계감사를 수행하고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E로부터 보수 33,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E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7년경부터 E 및 G와 관련된 소송 업무 등을 대리 수행하여 E에 대하여 수임료 청구채권이 있었는데, E는 2019. 10. 10. 피고에 대한 수임료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E가 별지 목록 제3채무자란 기재 채무자들에 대하여 갖는 ‘이자제한법상 법정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등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채무자들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 행위’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E의 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 외에 J 주식회사에 대한 신탁수익금 청구채권이 있었는데, 위 신탁수익금 청구채권에는 E가 받을 수 있는 수익액을 초과하는 액수의 채권을 피담보채권 또는 피보전권리로 하는 질권 및 채권 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어 E는 채무초과 상태였고, 그럼에도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피고에 대한 수임료 지급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피고에게 양도하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E와 피고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한다.

3. 판단

가. 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 여부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5467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E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거나 이 사건 채권양도 행위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었음을 증명할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들에게 있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다가 올 제6, 7, 11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E의 대표였던 G는 E의 발행주식 60,000주 중 57,000주를 K에게 담보목적으로 양도하면서 13억 원을 빌렸고, 위 K이 2017. 3. 15. 위 주식을 정산절차 없이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G에게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사건(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가합407442호)에서 2017. 3. 15. 기준으로 E의 발행주식 1주당 매매가액에 관한 감정이 진행되었는데, 해당 감정인은 E의 기업가치는 552억 원 상당이고, 부채가치는 417억 상당이라고 감정한 점, ㉡ 위 감정서에는 E가 진행한 이 사건 사업으로 예상되는 사업이익이 약 272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 J 주식회사는 E를 상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2019. 10.경 신탁이익 125억 원 및 9억 원을 공탁하였고, 당시 처분되지 않은 근린생활시설(상가 총 12개 점포, 2019. 7.경 상가 가치 72억 원으로 평가됨)이 있었던 점, ㉣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E가 원고들 외에 부담하는 다른 채무의 규모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과 입증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고들의 주장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E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거나 이 사건 채권양도 행위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채무변제를 위한 채권양도 행위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1)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는 기존 금전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다른 금전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60822 판결 등 참조).

2) E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움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이 사건 채권양도 행위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E의 피고에 대한 수임료 지급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이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금전채권인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도하는 계약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의할 때 E가 피고와 통모하여 원고들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아닌 한 이 사건 채권양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E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각 증거들에 갑 제9호증, 을 제5, 8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E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기 이전부터 피고에게 ‘2017년경부터 법률자문 및 소송대리 등으로 피고에게 발생한 수임료 채권은 11억 9,000만 원에 이른다’는 내용으로 정산확인서 및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등을 수차례 작성하여 주었던 점, ㉡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에는 양도대상이었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의 구체적인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은 E가 이미 변제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중 이자제한법상 법정최고이자율을 초과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며 초과 부분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의 내용 자체만 보더라도 E의 자산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성질이나 추심 가능성 등에 비추어 E 및 G와의 소송위임계약에 따른 피고의 지속적인 사무 처리를 통해 초과변제를 받은 채권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실제 추심이 이루어진 경우에 비로소 E의 적극재산에 확정적으로 편입시킬 수 있는 것이거나, 적어도 법률전문가에게 추가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고 법률사무수행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금전적 가치가 구체화될 수 있는 것으로서 피고에 대한 수임료 채무의 지급에 갈음하여(혹은 지급을 위하여)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한다고 하여 이를 E의 일반채권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에도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채권양수인인 피고가 제3채무자들로부터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 전액을 변제받아야 비로소 E의 피고에 대한 변호사수임료 채무가 대등액을 한도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채권양도 행위로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기로 하는 통모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체결이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상언, 판사 이승민, 판사 손고은

별지

목 록

양도인 주식회사 []가 2019. 10. 10. 양수인 법무법인 []와 체결한
아래 각 채권양도양수계약

순번	제3채무자	양도채권의 유형	양도채권액
1	[]	부당이득반환청구권	2016. 3.부터 2017. 3.까지 제3채무자 명의 또는 계산으로 양도인과 체결한 (준)소비대차계약에 기해, 양도인이 제3채무자에게 변제한 금액 중 이자제한법상 법정최고이자율을 초과한 금액
2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양도인이 2016. 8. 30.경 제3채무자로부터 차용한 6억 원에 대해 변제한 금액 중 이자제한법상 법정최고이자율을 초과한 금액
3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양도인이 2016. 8. 30.경 []으로부터 60,000,000원 차용시 실제 차용한 5억4천만 원을 제외하고 제3채무자가 수령한 6천만 원
4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양도인이 2016. 8. 30.경 제3채무자로부터 차용한 160,000,000원에 대해 변제한 금액 중 이자제한법상 법정최고이자율을 초과한 금액
5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양도인이 2016. 8. 23.경 제3채무자로부터 차용한 4억 원에 대해 변제한 금액 중 이자제한법상 법정최고이자율을 초과한 금액

1) 소장 청구취지에는 주식회사 E에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제3채무자인 별지 목록 기재 채무자들에 대한 통지를 구하는 것으로 설했다.